

사형 폐지와 인도적 대체형벌의 수립*

— 최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상대적 종신형의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주 현 경**

목차

I. 들어가며	IV. 사형의 대체형벌로서의 종신형
II. 사형 및 종신형 관련 현황	V. 상대적 종신형 제안
III. 새로운 종신형 제도 신설 논의	VI. 결론

I 국문초록 I

본 논문은 1997년 이후 2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현시점에서, 사형 대체 형벌로서 ‘종신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고찰하며, 사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모델 중 상대적 종신형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절대적 종신형은 신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수형자에게 자유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상대적 종신형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석방을 위한 최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본 논문은 발표문 “사형제를 대체하는 상대적 종신형 제도”, 「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외(2024. 11. 29.)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논문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논문접수일 : 2026. 2. 1., 심사개시일 : 2026. 2. 6., 게재확정일 : 2026. 2. 20.

소 복역 기간은 현행 20년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0년과 같은 과도한 기간 설정은 실질적으로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 없어 형벌의 적정성을 잃게 된다. 둘째, 적어도 무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제도를 현행 행정처분 중심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적 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판결의 취지를 형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형 폐지는 단순한 생명 박탈의 금지를 넘어, 법치국가적 형벌 원칙에 부합하는 인도적 대체형벌의 수립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주제어 : 사형제 폐지, 대체형벌, 상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I.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집필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작업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2026년 기준으로 28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사이의 긴 시간동안 –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 많은 법학자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으나¹⁾ 사형제도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사형제 찬반의 논의에서는 더 이

1) 김대근, “사형 폐지 이후 대체형벌의 지평과 전망”, 『인권연구』 제7권 제2호, 2024, 263면 이하;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고려법학』 제44권, 2005, 141면 이하; 윤종행, “사형폐지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3, 79면 이하; 이덕인,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론의 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2018, 1면 이하; 허완중, “사형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8, 109면 이하;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223면 이하 등.

상의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찬반 논거가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형제 폐지에 대한 학계의 접근 태도가 약간은 변화하였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변화는 사형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중신형’ 제도에 대한 관점 변화이다. 사형 폐지를 위한 초반의 논의에서는 사형의 대체형벌로 주로 ‘절대적 중신형’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다.²⁾ 그러나 최근에는 사형제의 대체형으로 상대적 중신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³⁾

이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의 대체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더욱 현실화되었음을, 그리고 그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대체형벌제도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전의 대체형 논의는 주로 대체형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사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절대적 우위로 강조되었으나,⁴⁾ 이제는 더욱 안정적인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의 입장에서 대체형 그 자체의 정당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Ⅲ. 1.) 국회의 사형폐지 관련 법안은 최초의 유재건 의원안(의안번호 152463) 및 정대철의원안(의안번호 161085)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대적 중신형에 해당하는 가석방 없는 중신형이었으며, 2000년대 초기의 논의에서는 사형폐지를 위하여 절대적 중신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한 주장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1), 223면 이하.

3) 일례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의 주제와 논의를 살펴보면, 2014년(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중신형 도입이 보다 설득력을 얻었던 반면, 10여 년이 지난 2023년 이후에는 사형제의 대체형으로 인권에 기반한 상대적 중신형의 도입을 논의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볼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및 한국형사법학회 형법(전면)개정안 등에서도 사형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중신형이 입법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1), 231-232면.

본 연구는 사형 폐지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대체형벌로서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닌 상대적 종신형이 적절함을 밝히고, 사형제 폐지 후 도입되어야 할 대체형벌로서 최근 입법안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한 후, 어떠한 상대적 종신형의 모습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상대적 종신형의 구체적 설계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므로, 사형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며⁵⁾ 절대적 종신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최소화하기로 한다.⁶⁾

5) 위 각주 1)의 논의 참조. 다만 사형존치론의 근거 중 인륜적 흉악범과 통상의 사회인에게 동일한 ‘인권’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사형제 폐지 논거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 보장의 주체는 국가라는 점이다. 즉, 사형 폐지 논의는 흉악범이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논의이다. 이때 인권의 본질은 인간의 특정 행위와 무관하게 그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점 그 자체에서 유래한다. 우리 사회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 및 사회적·윤리적 제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범죄자에 대한 태형이 금지되고, 자유형 집행 중에도 수형자에게 적절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은 박탈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7조 등 국제인권규범이 이미 법적 요청으로서 확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사형은 바로 이 경계, 즉 국가 권력이 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존엄의 최후의 선을 침범하는 형벌이라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정리해 보면, 사형제 폐지 논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의 선악(善惡)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국가가 한 인간을 영구히 구제불가능한 존재로 선언하면서 인권의 핵심인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가지는가라는 물음에 닿아 있다. 이 질문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에서 유래하는 절대적 권리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현대 법치국가에서의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벌의 재사회화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는 근본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6) 사형의 대체형벌로서의 절대적 종신형이 지닌 문제점에 집중한 연구로 신양균,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우선 현재 사형 및 종신형에 관련된 법률, 사형 관련 통계, 사형제 관련 여론조사 현황 및 가석방 현황(Ⅱ), 최근 정부 및 학계에서 제시한 사형의 대체형벌 논의를 개관하고(Ⅲ),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이 타당함을 논증한 후(Ⅳ),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논의되는 상대적 종신형 제도에서 지켜져야 할 내용을 검토한 후(Ⅴ) 논의를 마무리한다.

Ⅱ. 사형 및 종신형 관련 현황

1. 정의

가.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종신(終身)’이라는 단어는 일상어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몸(身, 신체)이 다할 때까지(終, 마칠 때까지), 즉 “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종신형은 여러 종류의 형벌 중 신체 구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종신토록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종신형은 범죄자를 사망 시까지 평생 구금하는 형벌을 뜻한다.

종신형은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상대적 종신형은 이 구금형의 집행 중 형기를 다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형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유형의 종신형을 뜻한다. 어떠한 기준이나 조건,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는 ‘상대적’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반대로 그동안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617면;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권, 2013, 385면 이하 참조.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접속일: 2026. 1. 31.

사형 폐지의 대안으로 낮설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절대적 종신형은 그러한 가능성조차 허용되지 않은 종류의 형벌을 뜻한다. 다만 사면법에 따른 사면과 감형은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대한민국헌법 제79조), 이에 따른 형 집행의 면제 등까지 불허하는 유형의 절대적 종신형은 사법 체계를 벗어난 논의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면 등은 제외하고 일생동안 다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논하게 되므로,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표현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⁸⁾ 이 글에서는 절대적 종신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나. 무기형의 의미

현행 형법상 범죄의 종류로 가장 중한 형은 사형이며(형법 제41조), 그다음으로 중한 형은 상대적 종신형 형식의 무기징역이다(형법 제41조, 제50조). 2010. 4. 15. 일부개정된 형법(법률 제10259호)에서는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의 최소 형집행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였고(형법 제72조),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동일하게 10년이다(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된다(형법 제76조 제1항). 이렇듯 우리 형법의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가능한 종류의 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무기형인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종신형과 동일한 의미이다. 뒷부분(V. 5. 가)에서 현행 무기형을 그대로 둔채 별개의 종신

8) 김광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NARS 현안분석』 제301호, 2023. 10. 19., 2면.

형을 신설하자는 견해를 검토할 것이어서, 본격적 논의 전 우리 형법의 무기형의 성격이 종신형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무기(無期)의 뜻은 사전상으로는 “언제까지라고 정한 기한이 없음”을 의미한다.⁹⁾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무기형을 단순히 기한을 정하지 않은 형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상 형기를 정하지 않은 형은 ‘무기형’이 아닌 ‘부정기형’으로 분류되며,¹⁰⁾ 우리 형법에서 무기징역형은 종신자유형을 뜻한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형을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이라 판시하고,¹¹⁾ 무기징역형의 본질을 “일생동안 종신적으로 복역하게 하는” 것이라 보았다.¹²⁾ 또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1항은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는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형기로” 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확정된 자유형이 종신형인 때에는 형기가 무기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무기형이 종신형에 대응함을 보여준다.¹³⁾

이와 달리 현행 형법상 무기형은 부정기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실질적으로는 종신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⁴⁾ 형법상 무기형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석론으로서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접속일: 2026. 1. 31.

10) 죄형법정주의원칙은 형벌의 명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며,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사정책적 효과를 이유로 소년법(제60조)에서 활용되고 있다.

1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및 그 외 하급심의 무기형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이덕인,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대안: 바람직한 사형 대체형벌의 방향 -종신형 또는 무기형-”,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안 - 2025 사형제도폐지연례세미나 자료집」, 2025. 9. 19., 55-56면.

13) 이덕인, 앞의 논문(각주 12), 54면.

14) 한영수,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2021, 115면.

이러한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을 전제로 사형의 대체형벌로 현행 무기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상대적 종신형 제도를 신설하자는 입법론으로 나아간다면, 형법의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종신형 기능을 수행하는 무기형이 종신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 종신형과 무기징역형을 구별하여 상대적 종신형은 원칙이 ‘종신’의 복역이되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형벌”이고, 무기징역은 가석방의 조건을 전제하는 형벌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¹⁵⁾ 이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지는 가석방제도의 운영방식의 문제일 뿐, 무기형과 종신자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본질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

2. 사형·무기형 관련 통계

가. 판결 선고 및 사형수·무기수 수용 현황

대체형벌의 논의에서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 등이 논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련된 통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최근 10년 동안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종국처리 내용 중 사형 및 무기형 종국처리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사형의 경우 2018년 5명에 대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높은 수치였고, 가장 최

15) 한영수 외 3인 공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67면.

16) 새로운 대체형벌로서의 종신형의 용어에 대한 논의는 아래 V. 5. 가.에서 다시 다루어 본다.

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명에 대해 사형선고가 확정되었으며, 10년의 기간 중 5년은 사형선고가 없었다. 무기징역의 경우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대 선고 건수는 2016년 43명, 최소 선고 건수는 2021년 11명이었다. 가장 최근인 2022년과 2023년에는 25명, 28명이 무기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¹⁷⁾ 2024. 12. 30.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일반 55명, 군교도소 소관 4명으로 총 59명이다.¹⁸⁾

〈표 1〉 제1심 형사공판사건 종국처리 현황(2014년~2023년)¹⁹⁾

(단위: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형	1	-	-	-	5	3	-	-	1	1
무기	31	42	43	32	29	16	37	11	25	28

나. 강력범죄 발생 현황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의 발생이 높을 경우 사형 및 무기형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접근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력범죄 발생의 증감 현황을 살펴본다.

범죄 추이를 종합해 볼 때 강력범죄가 감소 추세라는 평가가 있다.²⁰⁾ 강력범죄 중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살인범죄는 지난 10여 년간 감소 추세임이 명확하지만, 성폭력범죄는 증가추세로 2022

17) 법무연수원, 2024 범죄백서, 2025, 305-306면.

18)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25. 7., 8면.

19) 법무연수원, 앞의 책, 306면의 표 II-52 중 사형, 무기형을 선별, 편집하였다.

20) 한상훈, “형법개정안의 취지와 방향”, 한국형사법학회 외,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 자료집」, 2024. 10. 25, 13면.

년 최고 건수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체 강력범죄에서 94.3%를 차지하였고, 이후 2023년에는 2021년과 동일하게 강력범죄의 93.7%를 차지하였다.²¹⁾ 그러나 각 범죄 종류 내에서도 사형 및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종류의 범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²²⁾

3. 가석방 현황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가석방 허가 통계를 살펴보면 연도별 신청자는 11,000명대에서 14,000명대에 이르고 이 중 허가율은 약 65%-75%를 보이고 있다.²³⁾ 형기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성인 가석방자 숫자를 기준으로 형기 1년 이상 2년 미만이 가장 높은 가석방 비율(약 40%대)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형을 집행하는 경우 가석방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형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의 가석방 비율은 최근 10년간 3.2%(175명)-4.4%(457명), 형기 10년 이상인 자의 가석방 비율은 최근 10년간 1.0%-3.4%로, 가장 최근인 2023년은 1.4%(127명)였다.²⁴⁾

2015년-2024년까지의 성인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을 살펴

21) 법무연수원, 앞의 책, 73-74면.

22)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미국에 대한 연구에서 강력범죄는 감소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감소의 폭 또한 큼에 비하여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은 점점 더 많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통계에 대하여 Nellis, Still Life: America's Increasing Use of Life and Long-Term Sentences, 2017. 5. 3., <https://www.sentencingproject.org/publications/still-life-americas-increasing-use-life-long-term-sentences>(접속일: 2026. 1. 31.)를 인용하여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권, 2022, 8면.

23) 법무연수원, 앞의 책, 460면.

24) 법무연수원, 앞의 책, 461-462면.

보면 집행률 60% 미만인 자는 2018년 50명(0.6%), 2022년 38명(0.4%), 2023년 16명(0.2%)만이 유의미한 통계였으며, 그 외에는 0.1%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2022년을 제외하고는 형집행률 80%이상 90% 미만인 경우가 다수였고(39.6%-58.1%), 90% 이상의 집행률 상황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자도 10.6%-38.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²⁵⁾

무기형 집행 중 가석방된 인원은 2018년 40명이었고, 이후 2019년부터는 연간 1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무기형 가석방자의 형집행기간을 살펴보면 주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형집행 후 가석방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²⁶⁾

Ⅲ. 새로운 종신형 제도 신설 논의

1. 사형폐지 관련 국회 입법안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현재 22대 국회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이 중 초기 2개의 법안은 기존의 무기징역형 등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제도를 제시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사형 대체형벌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박선영의원안(의안번호 1800928) 및 주성영의원안(의안번호 1809976)은 가석방 외에도 사면법상의 사면·감형(·복권)이 가능하지 않은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 법무부 교정본부, 2025 교정통계연보, 2025, 337면.

26) 법무연수원, 앞의 책, 461-462면.

〈표 2〉 사형폐지 법안 발의 경과²⁷⁾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대체형	처리결과
15대	1999. 1. 27. (152463)	사형폐지 특별법안	유재건 의원 등 91인	무기징역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16대	2001. 10. 30. (161085)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정대철 의원 등 63인	무기징역·무기 금고 (가석방 경과기간 15년)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17대	2004. 1. 29. (171129)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유인태 의원 등 175인	가석방 없는 중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18대	2008. 9. 12. (1800928)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영 의원 등 39인	가석방 및 사면·감형 없는 중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2009. 10. 8. (1806259)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김부겸 의원 등 53인	가석방 없는 중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2010. 11. 22. (1809976)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성영 의원 등 10인	가석방 및 사형·감형·복권 없는 중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19대	2015. 7. 6. (1915958)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유인태 의원 등 172인	가석방 없는 중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20대	2019. 10. 10. (2022856)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의원 등 75인	가석방 없는 중신형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21대	2021. 10. 8. (2112795)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의원 등 30인	가석방 없는 중신형	임기만료 폐기 (미상정)
22대	2024. 11. 29. (2206080)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 의원 등 65인	가석방 없는 중신형	소관위 심사

27) 제426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25. 7., 8-9면의 내용에서 22대 국회의 내용을 추가 편집하였고, 대체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2. 사형폐지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

사형제와 관련된 정부입법안으로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8월 1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는 상대적 종신형인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0년의 형집행 이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이보다 더 중한 무기형인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는 개정하지 않아 새로운 형벌의 종류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형법 제42조 제2항에서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무기형을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하였고, 제72조에서 무기형을 선고하는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안은 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어,²⁸⁾ 2023년 11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유사한 법률안으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7. 28., 의안번호 2123539) 및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8. 9., 의안번호 2123727)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안 역시 사형제도를 유지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법무부의 2023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대한

28) 정부, 제2125236호(2023. 10. 31.) 제410회 국회(정기회).

변호사협회는 찬성 의견을 밝혔고,²⁹⁾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폐지를 전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동시에 이러한 유형의 종신형의 위헌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해당 형벌로 제재를 하게 될 범죄를 한정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³⁰⁾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학술단체인 한국형사법학회 역시 2023년 법무부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대안으로 가석방 허용을 위한 형집행 경과기간을 50년으로 두는 유형의 상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법을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³¹⁾

3.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 신설 논의

이후 2024년 한국형사법학회는 「한국형사법학회 형법(전면)개정안」(이하 ‘형법(전면)개정안’)에서 사형존치 및 사형폐지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대안으로 제시한 후,³²⁾ 사형존치안과 사형폐지안 모두 위 의견서와 동일하게 50년의 최소복역기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다(안 제73조 제1항).³³⁾

29) 대한변호사협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2023. 9. 12.,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3078&types=7&searchtype=&searchstr=>, 접속일: 2006. 1. 31.

30) 법률신문,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2023. 8. 31., <https://www.lawtimes.co.kr/news/190851>, 접속일: 2026. 1. 31.

31) 법률신문, “한국형사법학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신 ‘종신형’ 도입을”, 2023. 8. 28., <https://www.lawtimes.co.kr/news/190731>, 접속일: 2026. 1. 31.

32) 형법(전면)개정안은 한국형사법학회 내의 형법개정연구위원회 전체투표 결과를 반영하였는데, 사형존치와 사형폐지가 거의 동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천현, “형법총칙 형벌론 개정안”, 한국형사법학회 외,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 자료집」, 2024. 10. 25., 113면.

3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형사법학회는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반대하면서 5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건의한 바 있기에, 이에 대한 찬

사형제 폐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체형벌로서 다루어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인권침해적 성격에 대해 학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가석방을 위한 형 집행 경과기간을 50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하였고, 이는 현행 무기징역과 사형의 중간단계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³⁴⁾ 이에 대한 적절성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외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역시 사형폐지의 대체입법안으로 최저복역기간 25-30년의 상대적 종신형 제도를 제시하였고,³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에서도 최저복역기간 약 25년의 상대적 종신형을 제안하였다.³⁶⁾

IV. 사형의 대체형벌로서의 종신형

1. 사형제 폐지 전제 여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사형이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폐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반 등이 투표 선지에 존재하였고, 투표 결과 5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다수인 57.8%가 선택하였고, 35.5%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택하였다. 기타 현행 유지 및 다른 의견(종신형과 무기징역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 이천현, 앞의 논문, 114면.

34) 한상훈, 앞의 논문, 14면.

35) 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449면 이하.

36)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371면 이하, 376면.

대체하는 형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대체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법안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사형제를 유지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채택한 입법안(2023년 법무부안 등), 사형제를 유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입법안(2024년 한국형사법학회 형법(전면)개정안 중 사형존치안),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형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채택한 입법안(17대 이후 국회 입법안), 사형제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입법안(2024년 한국형사법학회 형법(전면)개정안 중 사형폐지안,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등이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분류 중 사형제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논거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사형제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형제를 존치시킨 채 새로운 대체형벌을 추가한 입법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 여론에서는 사형제 유지 의견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가 존

37)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1994년 이래 2022년까지의 6회 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존치론이 폐지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22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폐지 관련 공개 변론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69%가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였다(한국갤럽,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504호(2022년 7월 3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12#B>, 접속일: 2026. 1. 31.).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유지 의견이 79.7%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가 59.8%,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가 19.9%이었다. 사형제 폐지 의견은 20.3%였는데, 그 중 ‘당장 폐지’는 전체

치되는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체 종신형을 추가한다는 것은 사형 제도의 폐지를 더 멀게 하면서 새로운 중형제도 및 엄벌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추후에 사형 폐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거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사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추후에 사형제만을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더 타당해 보인다.³⁸⁾ 현재에도 사형제도는 매우 드물게 선고되고,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무기징역 제도 하에서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의 가능성은 법규범적으로 열려있지만 실제로 무기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종신형 제도는 반드시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2. 종신형의 가석방 허용 여부

둘째, 사형의 대체형벌인 종신형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이어야 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새로운 형벌로서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형벌이 논의되는 이유, 즉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명제, 또는 ‘사형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분석적 상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며, 사형은 왜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사

의 4.4%,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15.9%로 나타났다(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140-141면).

38) 김혜경,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 형법총칙’에 대한 토론문”, 한국형사법학회 외,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 자료집」, 2024. 10. 25., 141면.

형 폐지의 가장 큰 논거는 인간의 생명권이라는 인권 침해 때문이다.³⁹⁾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형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에 해당한다. 실제 사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그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있으며,⁴⁰⁾ 사형제도는 범죄자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⁴¹⁾는 점에서도 인간존엄에 반한다. 설령 사형제 존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형 폐지와 동일한 인권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적 폐지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⁴²⁾ 이는 개인적 찬반과 별개로, 국가 차원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적어도 생명을 박탈하는 형의 종류는 아니라는 점에서 사형보다 진일보한 제도임은 명확하다.⁴³⁾ 그렇지만 – 개인의 ‘생명’ 박탈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사형에 대한 비판 논거의 대부분은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39) 이희훈,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일감법학』 제51호, 2022, 301면.

40) 이희훈, 앞의 논문, 301-302면.

41) 이희훈, 앞의 논문, 299-300면.

42)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5. 10. 9.,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541>, 접속일: 2026. 1. 31.

43) 신양균, 앞의 논문, 637면; 김대근, “입법예고된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 2023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자료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 2023. 11. 14., 23면.

첫째, 사형이 생명권을 중국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라면,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은 인간의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다.⁴⁴⁾ 이러한 종류의 형벌은 신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산 사람을 죽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생매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⁴⁵⁾

둘째,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은 생명의 끝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를 잃은 자의 공포가 끝없이 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간존엄에 반하며, 구금을 통하여 수형자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가석방이 불허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더 이상 절대로 시민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실제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석방이 불허되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형집행대상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단절된다.⁴⁶⁾

셋째,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은 형벌이론적 관점에서 그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이 형벌제도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형벌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⁴⁷⁾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형자에게 징역형의 교정 목적은 의미를 잃게 된다. 이들의 행동 개선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하게 될 뿐이다. 위협이론으로 불리기도 하는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엄벌주의 정책이 준법적 행동에 대한

44) 주현경, 앞의 논문, 397면.

45) 신양균, 앞의 논문, 637-638면.

46) 주현경, 앞의 논문, 398면.

47) 김선택, 앞의 논문, 166-167면; 신양균, 앞의 논문, 638면;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2012, 18면;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교정연구』 제16호, 2002, 173면; 주현경, 앞의 논문, 406-407면.

동기를 실제 불러 일으키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⁴⁸⁾ 강력범죄 중 살인범죄는 범행동기가 계획이 아닌 우발적 동기인 경우가 매우 높다는 점도 이러한 논증을 뒷받침한다.⁴⁹⁾

마지막으로 사형 역시 감형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감형된 무기수형자 역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여 출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⁵⁰⁾ 가석방(및 감형)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은 사형이 존재하는 현행 제도에서도 가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⁵¹⁾

사형 폐지의 대안으로 어떠한 형태의 종신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상황에 놓여있었던 독일의 법령 변화는 우리가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1949년에 사형제를 폐지한 독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취하였으나, 197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BVerfGE 45, 187 결정에서 무기징역형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수형자의 인간 존엄성(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사회국가 원리에 근거한 재사회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기징역형에서도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⁵²⁾ 유

48) Weber, Die Abschaffun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über Tatschuld und positive Generalprävention, in: MschKrim 1990, S. 77.

49) 주현경, 앞의 논문, 410면.

50)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 결정은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때, 그 감형이 된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되기 위한 조건을 계산하기 위한 형의 집행기간의 형기 기산일을 감형일로 보았고, 사형수로 집행대기하던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30 전원재판부 역시 “사형확정자라고 하더라도 감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형이 변경되면 형법 제72조가 규정하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되고 그때로부터 형집행 요건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가석방을 위한 최소복역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점이 감형된 무기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1) 한영수, 앞의 논문(각주 14), 119면.

52) NK-StGB-Düinkel/Pruin, § 38 Rn. 32.

렵인권재판소에서도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형벌”로 유럽인권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 본 바 있고, 2020년 UN범죄방지형사사법회의(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ongress) 역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제도는 “기본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⁵³⁾

3.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특별감형 제도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영국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 무기수형자의 석방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 유무를 통하여 수형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일본에서도 종신구금형에 대하여 사면법상의 사면 이외의 감형절차를 제도화하는 고민을 발전시킨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한 이상(理想), 즉 죽는 순간까지 수형자를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벌제도는 현실에서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어떠한 종신형이라 하더라도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필요함을 설득해주는 예에 해당한다.

영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종신복역명령, whole life order: WLO) 제도를 두고 있다. 이 형벌에 대하여는 가석방심사위원회(Parole Board)의 심사를 통해서도 석방이 불가하다.⁵⁴⁾ 이에 대하여

53) 권지혜, 앞의 논문, 18면.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살인범죄 아닌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에서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Graham v. Florida, 130 S. Ct. 2011, 2023 (2010)]을 내린 바 있다. 미성년자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 미성년자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이유가 되었다(권지혜, 앞의 논문, 18면). 미국 수정헌법 제8조는 과도한 보석금 또는 벌금, 그리고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s)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보호협약 제3조를 위반하여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바 있다.⁵⁵⁾ 그러나 이후 2017년 유럽인권재판소는 *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영국의 범죄형벌에 관한 법률(*Crime Sentences Act 1997*) 제30절에 “연민에 기반한 수감자의 석방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장관은 언제든지 종신수를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⁵⁶⁾ 무기수형자에게 석방이 고려될 수 있는 영국 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이라면 협약 제3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⁵⁷⁾ 즉 유럽인권재판소는 어떤 종류의 자유형이라 하더라도 석방 가능성 및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영국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5-10년에 1회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고 있다.⁵⁸⁾

우리나라의 제도 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무기수형자의 석방가능성으로는 사면법상의 사면 또는 감형만이 남게 된다. 일본보호사연합회는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종신구금형을 최고형으로 창설하는 경우 사면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인 행정권의 작용이라는 점, 정치성·자의성 측면에서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신구금형에 대하여 특별감형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54) 김광현, 앞의 논문, 4면.

55)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앞의 보고서, 222면. 결정 원문은 481면 이하 참조.

56) 번역은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UDOC,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과 비인도적인 처우”, <https://hudoc.echr.coe.int/app/conversion/pdf/?library=ECHR&id=001-216392&filename=CASE+OF+HUTCHINSON+v.+THE+UNITED+KINGDOM+-+%5BKorean+Translation%5D+summary+by+Kiyong+Kim.pdf>, 접속일: 2026. 1. 31.을 참조하였다.

57) 결정 원문은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앞의 보고서, 557면 이하 참조.

58)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앞의 보고서, 223면.

있다.⁵⁹⁾ 이 특별감형절차의 담당기관이 법원이라는 점, 필요기간 산정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무기징역 형 집행기간인 25년을 고려하는 점, 신청 기각에 대한 상소 허용 및 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 제도화⁶⁰⁾ 등은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V. 상대적 종신형 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종신형 제도인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은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죄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응보를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형 폐지 시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중에서도 현행 무기형보다 여러 요건을 강화한 상대적 종신형 제도들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형 대체형벌로서의 상대적 종신형의 여러 모습들을 검토하고,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지 구체화해 본다.

1. 형집행기간 등 조건이 엄격화된 무기형

그 첫번째는 가석방이 가능한 형집행 경과기간을 현행 20년보다 길게 설정하는 방법이다. 형집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특정한 기간을 정하는 방식, 연령에 비례하는 방식,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를 형집행 경과기간으로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연령에 비례하는 방식으로는 평균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삼

59) 김광현, 앞의 논문, 18-20면.

60) 김광현, 앞의 논문, 19-20면.

아 잔여수명의 2/3 이상 경과를 요건으로 두자는 견해가 있다.⁶¹⁾ 무기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계에 기반한 예측 결과에 사형제를 대체하는 중대한 형벌의 집행을 좌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⁶²⁾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대여명은 계속 변경될 것인데, 형 선고시를 기준으로 이를 정할 것인지 등 기대여명의 적용 기준시점을 확정하는 문제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정 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따르되 그 기간을 현행 무기형 형집행 경과기간인 20년보다 긴 25년, 30년 또는 50년으로 두자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위 형법(전면)개정안은 그 기간을 50년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선고되고 있는 사형(연평균 2건 이하)을 대체하며 점진적으로 사형 건수를 종신형으로 대체되도록 하고, 추후에는 점차 최소복역기간을 약 25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⁶³⁾

기간을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로 정하자는 견해도 있다.⁶⁴⁾ 이 견해는 현행 무기형 제도보다는 중하게 설정하되, 유기징역형의 형벌 상한선(30년, 가중시 50년)과 동일하게 기준을 정한다는 점을

61)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07, 143면.

62) 기대여명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판결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기대여명이라는 통계적 예측결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액의 규범적 산정과 무기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언제 회복시킬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그 중대성 및 통계적 예측결과를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63) 이천현 외 3인 공저, 형사법개정방안연구: 형법총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460-462면.

64) 이희훈, 앞의 논문, 310면; 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116면.

근거로 들고 있다.⁶⁵⁾ 그 외에도 최소한으로 현행 유기징역형이 가중되지 않을 경우의 형벌 상한인 30년을 넘을 것을 요구하는 견해,⁶⁶⁾ 25년,⁶⁷⁾ 20년⁶⁸⁾으로 두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무기수의 가석방기간의 현행 10년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에 대하여는 가석방기간을 ‘사망할 때까지’로 정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⁶⁹⁾

그 외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집행을 받던 자가 가석방될 경우 현행 절차 이외에 다른 사법절차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석방을 위한 형집행기간을 현행보다 긴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 내로 함과 동시에, 이에 더하여 보호관찰과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⁷⁰⁾

65) 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116면.

66) 허완중, 앞의 논문, 159면.

67)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 FORUM』 제15권, 2004, 243면은 논문 게재 당시인 2004년 기준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 가중시 25년이었던 구 형법(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가중 최대 기간인 25년과 동일한 기간을 산정하였으므로, 이후 형법 개정 내용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 앞의 논문, 167면 역시 동일하게 당시 유기징역형의 최고형기인 15년과 최고 가능 형기인 25년 사이인 15-25년을 적절하게 보았다.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613-614면은 현행 무기징역형의 형집행 최소기간인 20년보다는 길게 설정하고 징역형의 형기가 30년까지만 형법 제42조를 고려하여 2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68) 2010년 형법 개정에 발맞추어 무기징역형의 가석방을 위한 최소 형집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한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권 제3호, 2010, 278면. 윤영철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위한 최소 형집행기간은 동일하게 하되 가석방 요건에 ‘재범가능성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를 구성한다.

69) 이희훈, 앞의 논문, 310-311면; 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123면.

70) 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127면.

2.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대상 범죄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은 기존보다 엄격화된 유형이므로 이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의 유형도 한정할 것 또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신형의 양형 조건으로 모살의 유형일 것,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경우일 것, 다중인명 살상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⁷¹⁾

3. 가석방 절차의 강화

또한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에 대하여 가석방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견해들도 제시된다. 기존의 무기형과 달리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 수형자에게는 법원이 가석방 심사 결정을 하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⁷²⁾ 사법적 통제 방식으로는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 그리고 현행 제도와 사법적 통제를 결합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종신형’이라는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 수형자의 가석방은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인 법원에 다시 가석방을 신청하는 형식이 제안되기도 한다. 이 경우 최종 가석방허가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⁷³⁾ 현행 무기형 제도 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던 하급심 판결에서도 가석방에 대한 통제에 관련된 아쉬움을 밝힌 바 있어,⁷⁴⁾ 이 부분은 사형제도 폐지시 가장 중요한 논의지점이 되어야

71) 한영수, 앞의 논문(각주 14), 116면.

72) 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128면; 이희훈, 앞의 논문, 310면. 그 외 위 형법(전면)개정안 역시 점차 최소복역기간을 약 25년으로 낮추되 엄격한 가석방 요건을 두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천현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462면.

73) 한영수, 앞의 논문(각주 14), 118면; 허완중, 앞의 논문, 159면.

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5. 선고 2019고합204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이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고, 대전고등법원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외국의 종신형 관련 판례 및 입법

독일은 사형제 폐지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두었다가 이를 폐지한 이후인 1981년 독일 형법이 개정(제20차 형법개정법)되면서 제57a조를 통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적시하였다. 독일 형법 제57a조에 따른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5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제57조 제1항 제1문 제2호(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및 제3호(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또한 “가석방을 결정함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 시 위협되는 법익의 무게,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하고 보호관찰(Führungsaufsicht)이 잔형 집행 유예의 조건이 된다. 이때 보호관찰기간(Bewährungszeit)은 5년이다(제57a조 제3항).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 제도가 형집행 경과기간을 최대 50년까지로 하겠다는 견해, 그리고 사망 시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과하자는 제안과 비교해 볼 때 기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한편, 형법 제57a조가 시행된 후 첫 3년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 잔형집행이 유예된 경우는 총 302건 중 97건(32%)이었고, 205건(68%)

2022. 1. 25. 선고 2021노58,2021노254(병합),2021전노4(병합) 판결 역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선고 이유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임을 밝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가석방 판단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실시한 바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하여 다른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이덕인, 앞의 논문(각주 12), 56-57면.

은 가석방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5년을 복역한 수형자는 13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15년 이상을 복역하였는데, 15-20년 복역자가 34명, 20년 이상 복역자가 50명이었다. 가석방이 거부된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회적 예후의 불리함이 아니라 죄책의 중대성 조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1999년 Weber의 후속연구에 따르면 무기징역형의 가석방 최소 형집행기간인 15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면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⁷⁶⁾ 이후 2002년 독일 범죄통계청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⁷⁷⁾ 다만 이 통계는 무기징역형이 집행정지된 경우만을 다룬 것이다. 실제 종신 집행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2002-2021년 기간 동안 총 1,792건의 종료된 무기징역형 집행 중 사망건은 213건이다.⁷⁸⁾

한편 사형제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최고형벌을 무기형이 아닌 유기자유형으로 두고 있는 유럽 국가도 있다. 노르웨이는 15년, 크로아티아는 15년(중범죄의 경우 20-40년)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하다.⁷⁹⁾ 캐나다의 경우 사형폐지 후 1급 및 2급살인을 종신형으로 대체하였고, 2급살인의 경우 가석방이 될 수 없는 경과기간은 10-25년, 1급살인의 경우는 25년이다. 1996년 다중살인의 경우에는 가석방불가기간에 대한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2011년에는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⁸⁰⁾

75) NK-StGB-Dünkel/Pruin, § 38 Rn. 34.

76) Weber, Die Abschaffun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für eine Durchsetzung des Verfassungsanspruchs, Baden-Baden, 1999, S. 57 f. (NK-StGB-Dünkel/Pruin, § 38 Rn. 34에서 재인용).

77) NK-StGB-Dünkel/Pruin, § 38 Rn. 36.

78) 자연사 170건(9.5%), 자살 43건(2.4%)이다. NK-StGB-Dünkel/Pruin, § 38 Rn. 36.

79) NK-StGB-Dünkel/Pruin, § 38 Rn. 46.

80) 심현우, “캐나다에서의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대한 위헌

5. 검토

가. 용어 선택

사형 대체형벌로 다양한 상대적 종신형 형태가 제안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요소들을 검토해 본다.

첫 번째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입법안들은 현행 형법상의 무기형을 존치한 상태에서 이보다 더 엄격한 유형의 상대적 무기형을 또 신설하여 두 가지 유형의 상대적 종신형을 동시에 형법 내에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법(전면)개정안 제41조는 자유형을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신형을 “5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자유형”이라 설명하고 있어, 결국 형법총칙 내에 무기자유형이 종신형과 병존하도록 하였다.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안)」 역시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에 기존의 징역(무기 또는 유기)를 그대로 둔 채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형기로 하는 ‘종신형’을 신설하였다.⁸¹⁾

그러나 앞(Ⅱ. 1)에서 다루었듯, 현행 형법의 무기형은 이미 종신형을 뜻하는 것이다. 무기형과 종신형은 일상언어로 사용되거나 형사법적 용어로 정의할 때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대체형벌에서 새로운 종신형을 도입하면서 종신형과 무기자유형을 병존하도록 하는 입법안은 적절하지 않다.⁸²⁾

결정 - 평석 대상결정: R. v. Bissonnette, 2022 SCC 23(2022.5.27. 선고)-,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 237면.

81) 한영수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124-125면.

82) 같은 견해로 김성돈, “2024년 형법총칙개정시안에 대한 논평”, 「형사법연구」 제

물론 유사한 단어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방법이 법학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종신형의 두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현실적 이유에서 두 종류의 형별로 명명(命名)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형벌이 다른 유형의 형벌제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입법안들은 종신형과 무기형의 차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법률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안)」은 기존 무기형에 대한 설명 없이 종신형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형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이 두 개의 형벌은 가석방 불허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형기가 사망할 때까지라는 점은 동일한데, 종신형에 대한 설명만을 두어 오히려 두 형벌의 형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형법(전면)개정안 역시 종신형과 무기자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형벌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종신형은 50년,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3조 제1항), 가석방 기간을 종신형 20년, 무기자유형 10년으로 하고 있다(안 제75조).

용어의 문제는 형법총칙에 대한 입법 평가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으로, 형법상 각 용어는 형법 체계 전체에서 “유기적인 맥락성” 및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며,⁸³⁾ 수범자가 법률을 이해할 때 직관성을 떨어뜨리는 입법방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종신형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형과 새로 도입하려 하는 종신형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다만 그 조건을 달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37권 제1호, 2025, 134-135면; 김혜경, 앞의 논문, 141면.

83) 형법총칙에 대하여 형사입법평가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유기적 맥락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그 요소로 설명하는 김성돈, 앞의 논문, 108-109면.

입법 방식일 것이다.⁸⁴⁾

나. 형집행 경과기간의 설정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견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른바 ‘흉악범죄’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법감정, 즉 그들이 절대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뜻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와 유사하게 무기수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령의 시점, 또는 충분한 교정교화의 시점까지 가석방기간을 늦추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⁸⁵⁾

그러나 현재에도 유기자유형의 선고는 기본적으로 30년까지 가능하고, 형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형법 제42조). 2010년 형법 개정 시 장기 15년, 형 가중 시 25년이었던 기존 형법을 개정한 결과이다. 그리고 현행 무기징역형은 장기 50년까지 형집행이 가능한 유기징역형보다 더 높은 정도의 형집행이 필요한 경우 선고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행 무기형은 최소 형집행기간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견해는 무기수형자가 20년의 형집행 이후 가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 응보 관점 또는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또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가석방이 가능한 최소 형집행기간을 50년과 같이 길게 둘 것을 주장하는 견해 역시 무기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시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사회복귀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인다.

84) 예를 들어 ‘50년 의무복역 조건 종신형’과 ‘20년 의무복역 조건 종신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김성돈, 앞의 논문, 135면.

85) 이천현 외 3인 공저, 앞의 보고서, 449면 이하.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무기수형자에게는 가석방을 통한 사회 복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지, 모두가 실제 20년 후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한다. 앞서 다룬 무기형 관련 통계(Ⅱ. 3)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가석방되고 있는 무기수형자는 연 10명대이다. 또한 무기형보다 형이 경한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수형자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형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가석방 비율이 최근 10년간 1.0%-3.4%이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통계에서는 127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통하여 선고형이 높은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도 가석방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가석방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장 50년까지 교도소에 수용될 수도 있다. 또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가석방된다 하여도 현재 통계로 살펴본 형집행기간은 매우 길다. 무기수형자의 경우 가석방이 되기도 어렵지만, 가석방된 자의 경우 그 시기는 형집행기간이 25년에서 30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유기징역의 형의 집행에서도 가석방된 자의 형집행기간은 전체형기의 1/3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앞의 가석방 통계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가석방은 대부분 형집행률 70-99%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집행률 70%를 가정하였을 때 21년 이후에나 가석방이 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현재 가석방의 요건 판단에서는 처우등급이 고려대상이 되고, 높은 기준인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형집행기간의 약 80% 경과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러한 상황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⁸⁶⁾

따라서 무기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최소 형집행기간은 현행 법

86) 한성훈, “현행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2022, 267면.

률이 정한 20년을 유지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전면)개정안처럼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50년의 형집행 기간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기간 설정이며, 이 경우 형집행기간 50년과 개정안이 제시한 가석방기간인 20년(안 제75조)을 합하면 최소 70년 이상의 자유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이는 사형을 폐지하지는 대안으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절대적 종신형을 취하지 않으려 하였던 의도에서는 멀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참고로 유럽의 사형제 폐지 국가들은 대부분 상대적 종신형 형식의 무기징역형 제도를 선택하여서 현재 대한민국의 무기징역제도와 유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가석방을 위한 최소 형집행기간은 10년-30년 수준이다.⁸⁷⁾ 특히 사형제 폐지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제도로 제도를 개선한 독일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의 최소 형집행 기간을 15년으로 둔 점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정리해 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형집행기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가석방 절차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만약 현행 형벌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더 엄격한 새로운 형벌이 사형의 대체형벌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하여도, 최소 형집행기간은 무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을 넘지 않아야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87) 벨기에 15년(재범 23년), 덴마크 12년, 독일 15년,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 30년, 프랑스 18년(재범 22년), 이탈리아 26년, 오스트리아 15년, 스위스 15년, 폴란드 25년, 체코 20년, 헝가리 20년 등이다. NK-StGB-Dünkel/Pruin, § 38 Rn. 46.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제110조 제3항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선고한 “형의 3분의 2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25년을 복역한 경우, 재판소는 감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을 재검토한다. 그 전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과 비교해 볼 때 유기징역의 감형에 대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대하여 25년의 형집행기간은 충분히 긴 시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가석방의 사법적 통제

오히려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가석방제도이다. 앞서 지적하였듯,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뿐이어서 모든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필요적 가석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 가석방제도는 오히려 경직되어 있어서 유기징역 형집행대상인 수용자도 형기의 1/3이라는 최소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석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회에 복귀한다는 점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해당 범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응보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형이 폐지되는 경우 현행 형벌제도와 시민의 법감정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석방제도에 대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첫째,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일 형법 제57a조 제2호의 요건인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와 유사한 요건이 우리 가석방 제도에도

요건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⁸⁸⁾ 그 외 재범가능성에 관련된 요건 역시 명시될 필요가 있다.⁸⁹⁾ 무기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하여 일반인의 법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위협이기 때문이다.⁹⁰⁾

둘째, 현행 제72조가 가석방을 행정처분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석방제도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채택하는 사법적 방식과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형 제도로 구분 되는데,⁹¹⁾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⁹²⁾ 현재 가석방 적격심사 기준표 및 내부지침은 비공개되고 있어,⁹³⁾ 수형자는 공식적으로 가석방의 조건이나 자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⁹⁴⁾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에 관한 가장 큰 비판은 재량권의 문제이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사실상 분류처우위원회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구성원이 소장 및 교도관으로서 수형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⁹⁵⁾ 또한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면서 법원의 원 판결의 취지와 단절되어 운영될 우려가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 무기수형자가 너무 쉽게 가석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반인의 우려는 상대적 종신형

88) 주호노, 앞의 논문, 615면.

89) 주호노, 앞의 논문, 615면; 윤영철, 앞의 논문, 278면.

90) 김정연 외 3인 공저,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41면.

91) 한성훈, 앞의 논문, 258면.

92) 헌법재판소 2010. 12. 18. 선고 2009헌마70 결정 역시 가석방제도를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적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93) 김정연 외 3인 공저, 앞의 책, 71면.

94) 김정연 외 3인 공저, 앞의 책, 114면.

95) 김정연 외 3인 공저, 앞의 책, 71면.

이 사형의 대체형벌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러한 비판이 지적하는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하여 가석방을 사법적 통제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⁹⁶⁾ 모든 가석방 대상자에 대하여 가석방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형집행법원을 통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면, 재판 시 무기형을 선고하였을 때의 취지 등을 직접적으로 참작하여 가석방 여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즉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무기형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사법적 재심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형사집행과정은 법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가석방제도에 대한 사법적 심사이다.⁹⁷⁾ 법원의 경우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달리 1심 및 상급심 판결까지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원 판결의 판결 취지와 양형요소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모든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원 또는 지방법원 내에 가석방 심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하고,⁹⁸⁾ 이에 뒤따르는 법원조직 및 행정상의 선결 과제들이 너무나 크므로 수년 내에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사형 폐지의 대안으로서, 앞으로 적어도 모든 무기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위한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96) 한영수,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178면. 국내의 가석방제도의 사법처분화 도입방법에 대하여 정승환·신은영,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2011, 213면 이하.

97) 박학모·필리·야버스,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80면;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제22권, 2004, 374면 이하.

98) 국내의 가석방제도의 사법처분화 도입방법에 대하여 정승환·신은영, 앞의 논문, 227-228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기수형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석방 결정의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사법심사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형집행법원의 운영방법으로는 독일의 법원조직법상 형집행재판부(*Strafvollstreckungskammer*) 구성에 대한 내용을 차용하여(§ 78, 78a, 78b GVG, 독일 법원조직법)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첫째, 형집행법원의 설치 방법으로는 각 교정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별도의 부서(예: 형집행재판부)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⁹⁹⁾ 교정시설에 근접한 곳으로 토지 관할을 정한 ‘행형인접의 원칙’은 각 수용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¹⁰⁰⁾ 또한 ‘관할집중의 원칙’에 따라 가석방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업무가 일반 재판 업무와 분리되어 특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재판부와 구별되는 형집행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¹⁾ 또한 무기수형자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독일의 예와 같이(§ 78b GVG)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대집행부, *große Strafvollstreckungskammer*)가 담당하도록 하여 중대 사안에 대하여 균형있는 판단을 보장하고, 합의과정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 형집행법원을 전면도입하지 않고 우선 무기수형자에게 대한 가석방의 사법심사제도만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면, 각 교정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에 이를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원조직법상 조직개편 없이

99) 정승환·신은영, 앞의 논문, 228면.

100) 박학모·뮐러·야버스, 앞의 책, 103면; 정승환·신은영, 앞의 논문, 227-228면.

101) 독일의 경우는 형사집행부 외 제1심법원 역시 관할권을 가지며, 그 중 단 하나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할집중의 원칙이 적용된다. 박학모·뮐러·야버스, 앞의 책, 103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원의 사법심사 재판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심사 대상 무기수형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⁰²⁾ 가석방 허가 결정은 수형자의 개선의 정도, 재범위험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고도의 개별적·재량적 처분이며, 특히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지나는 경우 완전히 사회에 재통합된다는 점에서의 그 무게를 고려할 때 서면 기록만으로 수형자의 현재 상태와 내면적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통해 수형자에게는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사법기관은 수형자의 태도·언행·반성의 진정성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 소결

우리가 사형제 폐지와 함께 해야 할 상대적 종신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기준을 세워 보려 한다.

첫째, 사형제 폐지와 함께 해야 하는 형벌의 종류는 상대적 종신형이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형벌제도를 논의하는 이유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폐지를 전제로 하여, 그에 관련된 형벌 또는 형집행의 결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형벌 그 자체로서나 형집행의 방식에서 법치국가의 형벌로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선택할 수는 없다.¹⁰³⁾

102) 정승환·신은영, 앞의 논문, 227-228면. 한편 독일에서는 ‘구두변론절차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판 및 결정이 아닌 판결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박학모·뮐러·야버스, 앞의 책, 116면.

둘째, 더 중한 상대적 종신형 제도를 새롭게 제도화하면서 현행 무기징역을 대체하지 않고 두 종류의 장기구금형을 제도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특히 더 중한 상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면서 형집행 경과기간을 50년과 같이 무리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절대적 종신형 뿐만 아니라 상대적 종신형 또한 위험적이지 않은 제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986년 및 199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BVerfGE 72, 105 ff.¹⁰⁴⁾ 86, 288 ff.¹⁰⁵)는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치주의원칙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결국 과도한 형집행 경과기간을 두는 상대적 종신형 역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동일하게 법치국가의 형벌 제도로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무기형 제도와는 달리 새롭게 제시되는 상대적 종신형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석방이 가능한 형집행 경과기간을 현행 형법보다 긴 기간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형집행 경과기간의 문제는 현행 형법에서도 20년을 최소 형집행기간으로 정한 것일 뿐, 이 기간이 지난 후 필요적 가석방을 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더 높은 형집행기간을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03) 같은 견해로 사형폐지 논의 이후 결국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위험으로 판단하는 반복된 흐름을 “형벌변화의 순리”라 표현하는 권지혜, 앞의 논문, 26면, 이희훈, 앞의 논문, 311면.

104) 88세의 청구인이 22년동안 복역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정지 거부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형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한 결정례이다.

105) 독일 형법(StGB) 제57a조 제1항 제1문 제2호 관련 살인죄를 이유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잔여 형기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특별히 중한 책임이 추가적인 형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그리고 형사소송법(StPO) 제454조, 제462a조 및 법원조직법(GVG) 제74조 제1항 제1문, 제2항 제1문 제4호로서 위 형법에 관련된 관할 및 절차 규정들이 독일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를 다룬 결정례이다.

기타 가석방 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히 제도화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이 역시 그 기간이 사망 시까지여서 안 되며, 가석방 기간보다 동일하거나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결론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비교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수형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형제 폐지라는 가장 중대한 목적을 위해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전략적으로라도 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¹⁰⁶⁾ 이는 언제라도 다시 집행될 수 있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하여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논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에서는 사형에 대한 전제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형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법무부 안은 여전히 법률 내에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지만, 그 법률안이 제안된 현실적 이유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받아들이면서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의 종류를 찾기 위함이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던 때가 있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그 시점을 지나 사

106) 이를 사형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필요악으로 설명하는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59면.

형 폐지를 필연으로 여기면서 좀 더 나은 대체형벌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절대적 종신형인가, 상대적 종신형인가?”, “상대적 종신형 제도여야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들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형 폐지라는 당위 아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우리 형벌 체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학자마다 결론과 논증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 모든 논의가 형식적으로나마 존속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치열한 학술적 논쟁 자체가 사형 폐지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단행본]

-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 김정연·윤옥경·차종진·배상균,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박학모·필러·야버스,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법무부 교정본부, 2025 교정통계연보, 2025.
- 법무연수원, 2024 범죄백서, 2025.
- 이천현·윤지영·심승범·한국형사법학회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한상훈), 형사법개정방안연구: 형법총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 한영수·이진국·이덕인·김도우,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논문]

-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권, 2022.
- 김광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NARS 현안분석」 제301호, 2023. 10. 19.
- 김대근, “입법예고된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2023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자료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 2023. 11. 14.

- _____, “사형 폐지 이후 대체형벌의 지평과 전망”, 『인권연구』 제7권 제2호, 2024.
-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고려법학』 제44권, 2005.
- 김성돈, “2024년 형법총칙개정시안에 대한 논평”, 『형사법연구』 제37권 제1호, 2025.
- 김혜경,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 형법총칙”에 대한 토론편”, 한국형사법학회 외,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 자료집』, 2024. 10. 25.
-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2012.
- 신양균,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 심현우, “캐나다에서의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대한 위헌결정 -평석 대상결정: R. v. Bissonnette, 2022 SCC 23(2022.5.27. 선고)-”,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
-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권 제3호, 2010.
- 윤종행, “사형폐지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3.
- 이덕인,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론의 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2018.
- _____,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대안: 바람직한 사형 대체형벌의 방향 -종신형 또는 무기형-”,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안 - 2025 사형제도폐지연례세미나 자료집』, 2025. 9. 19., 44-86면.
-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07.
-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 FORUM』 제15권, 2004.
- 이천현, “형법총칙 형벌론 개정안”, 한국형사법학회 외, 『21세기 변화하는

- 사회와 형법(전면)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 자료집, 2024. 10. 25.
-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교정연구」 제16호, 2002.
- 이희훈,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일감법학」 제51권, 2022.
-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제22권, 2004.
- 정승환·신은영,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2011.
-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권, 2013.
-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 한상훈, “형법개정안의 취지와 방향”, 한국형사법학회 외,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개정의 방향과 내용 토론회 자료집, 2024. 10. 25.
- 한성훈, “현행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2022.
- 한영수,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 _____,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2021.
- 허완중, “사형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8.
-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 _____,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국외문헌>

- Kindhäuser/Neumann/Paeffgen/Saliger, Strafgesetzbuch, 6. Aufl., 2023. (인용: NK-StGB-저자명)
- Weber, Die Abschaffun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über Tatschuld und positive Generalprävention, in: MschKrim 1990, 65 ff.

〈기타 자료〉

-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25. 7.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5. 10. 9.,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541>, 접속일: 2026. 1. 31.
- 대한변호사협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2023. 9. 12.,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3078&types=7&searchtype=&searchstr=>, 접속일: 2026. 1. 31.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504호(2022년 7월 3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12#B>, 접속일: 2026. 1. 31.
- 법률신문,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2023. 8. 31., <https://www.lawtimes.co.kr/news/190851>, 접속일: 2026. 1. 31.
- _____, “한국형사법학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신 ‘종신형’ 도입을””, 2023. 8. 28., <https://www.lawtimes.co.kr/news/190731>, 접속일: 2026. 1. 31.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UDOC,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과 비인도적인 처우”, <https://hudoc.echr.coe.int/app/conversion/pdf/?library=ECHR&id=001-216392&filename=CASE+OF+HUTCHINSON+v.+T+HE+UNITED+KINGDOM+-+%5BKorean+Translation%5D+summary+by+Kiyong+Kim.pdf>, 접속일: 2026. 1. 31.
- Nellis, Still Life: America’s Increasing Use of Life and Long-Term Sentences, 2017. 5. 3., <https://www.sentencingproject.org/publications/still-life-america-increasing-use-life-long-term-sentences>, 접속일: 2026. 1. 31.

<Abstract>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Establishment
of Humane Alternative Punishments***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Legislative Bills and Legal
Issues Concerning Relative Life Imprisonment -**

Joo, Hyun Kyong**

This paper examines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Relative Life Imprisonment”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classified a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since 1997. It argues that among the various models proposed as alternatives to death penalty,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the more appropriate option. Drawing on precedents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t emphasizes that denying prisoners a prospect of release vio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odel: First, the minimum parole eligibility period should remain at 20 years or not exceed 30 years – the upper limit for fixed-term imprisonment. A 50-year minimum is prac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absolute life imprisonment and lacks proportional justice. Second, parole decisions must shift from administrative processes to judicial review by courts, addressing public concerns while ensuring adherence to sentencing principles. The death penalty’s abolition requires establishing humanitarian alternatives conforming to rule of law principles.

Key Words : abolition of death penalty, alternative punishment, relative life imprisonment, absolute life imprisonment, parol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r. jur.,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